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수영강사직 관리 규정

제정 2026.4.10. 규정 제2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라 수영강사 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 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수영강사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수영강습 지도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수영강사직근로자에 적용한다.

② 수영강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공단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격기준) 수영강사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수영) 이상 자격증 보유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

제5조(결격사유) 수영강사직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는 여수시도시관리

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다.

제6조(채용절차) ①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수영강사 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수영강사직근로자의 채용방법 및 절차는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7조(채용 구비서류) 이사장이 수영강사직근로자를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병역사항 기재)
4. 가족관계증명서 1통
5. 학력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
7. 채용 신체검사서 1통
8.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2매

제8조(근로의 체결) ① 이사장은 수영강사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별지 제1호서식은 계약당사자 상호 간 합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이사장과 수영강사직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정년) 수영강사직근로자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른다.

제10조(복무관리자) 복무관리자는 수영강사직근로자의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근무시간) ① 수영강사직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② 통상 수영강사직근로자의 시업시각은 05:30 또는 12:30, 종업시각은 14:30 또는 21:30으로 한다.

③ 시업 및 종업시각은 담당업무의 특성 및 업무상 필요, 정부지시 또는 공단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상황 관리)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기록·관리를 전자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복무 준수사항) 수영강사직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수칙 및 강습 운영기준 준수

2. 이용자에 대한 성실한 지도 및 친절한 응대
3. 회원지도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으로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4.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조치 협조

제14조(임금) ① 수영강사직근로자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사장은 수영강사직근로자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예산의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영강사직근로자의 수당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용기간에는 일부 수당을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금 지급일) ① 기본급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의 경우에는 익월 20일 이내에 계산 지급한다.

③ 수영강사직근로자의 수당 지급일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13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수영강사(시용 임용자를 포함한다)는 수영강사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수영강사직 근로자 기본급 봉급표(제14조 관련)

(월 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기본급	호봉	기본급
1호봉	1,872,620	18호봉	2,763,750
2호봉	1,930,580	19호봉	2,819,820
3호봉	1,982,920	20호봉	2,875,880
4호봉	2,029,150	21호봉	2,931,930
5호봉	2,072,740	22호봉	2,987,980
6호봉	2,109,420	23호봉	3,044,050
7호봉	2,147,120	24호봉	3,100,110
8호봉	2,203,190	25호봉	3,156,160
9호봉	2,259,240	26호봉	3,212,210
10호봉	2,315,290	27호봉	3,268,280
11호봉	2,371,350	28호봉	3,324,340
12호봉	2,427,420	29호봉	3,380,390
13호봉	2,483,470	30호봉	3,436,460
14호봉	2,539,520	31호봉	3,492,510
15호봉	2,595,580	32호봉	3,548,560
16호봉	2,651,650	33호봉	3,604,820
17호봉	2,707,700		

[별표 2]

수당지급기준표(제14조 관련)

구분	지급액	지급기준
자격수당	○ 생활스포츠지도자(수영) 2급이상: 월 50,000원	○ 자격증 보유자 ○ 지급일: 당월 20일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	○ 설날, 추석에 속하는 달에 각 60% 지급
정액급식비	○ 월 140,000원	○ 지급일: 당월 20일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지급일: 당월 20일
장기근속수당	○ 25년 이상 월 130,000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월 11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월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월 6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월 50,000원 ○ 5년 미만 월 30,000원	○ 보수규정 제23조 준용 ○ 지급일: 당월 20일
강습수당	○ 기본강습수당 - 30년 이상 월 690,000원 - 25년 이상 30년 미만 월 670,000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월 65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월 63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월 60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월 570,000원 - 5년 미만 월 540,000원 ○ 실적강습수당: 1강습당 20,000원	○ 기본강습수당 - 실적에 관계 없이 모든 수영강사직 근로자에게 지급 - 지급일: 당월 20일
		○ 실적강습수당 - 기본강습시간을 초과한 강습실적에 대해 지급 - 지급일: 익월 20일 이내 ※ 기본강습시간 - 1개월 단위기간 동안 1일당 3시간의 강습시간 예) 특정월 영업일 22일 기준 : 66시간
안전근무수당	○ 수상안전근무: 1근무당 10,000원	○ 지급일: 익월 20일 이내

- 출산 등 기타 사유에 의해 수상안전으로 직무가 전환되는 경우 기본강습시간은 안전근무 1일당 6시간으로 간주
- 공가 및 연가는 기본강습시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않는다. 시간단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 시설의 대정비, 대관, 대회유치 등으로 강습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일은 기본강습시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않는다.
- 병가, 개인상병휴직 기타 근로자의 사유에 의해 강습근무에 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강습시간 산정 시 포함한다.
- 채용, 휴직, 복직, 퇴직, 결근 등은 일할 계산. 직위해제 등에 따른 감액기준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표준근로계약서(안)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함)과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 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 및 휴게 시간

- 근무형태: 2조 2교대(오전조↔오후조)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 오전조 근무시간 05:30 부터 14:3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 오후조 근무시간 12:30 부터 21:30까지(휴게시간 18:00부터 19:00까지)
- 담당업무의 특성 및 업무상 필요, 정부지시 또는 공단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근로자의 휴가는 「취업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제12조관련)]

시 간 외 근 로 기 록 부

연 번 : _____
 부서명 : _____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부 장

직명 및 등급	성 명	시 간 외 근 무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